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사실을 같은 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7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지오종합 건설(주) (표윤분)	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 2-1 (중리동)	건축공사업 (10-2356)	영업정지 4개월 (2026. 8. 14. ~ 2026. 12. 13.)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10 조 (등록기준 미달)	「건설산업기 본법」 제 83 조제 3 호의 3